

##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02
----------	-----

제출연월일 : 2010. 11.

제 출 자 : 고호근, 신성봉, 김영길, 김지근, 황세영,

박흥규, 이호상, 서경환, 김순점, 정현희 의원

### 1. 개정이유

- 가. 중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관발주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 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 나.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이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공사감시관의 추천을 받아 민간인을 위촉하여 당해 공사를 감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제3항)
- 나. 2억원 이상의 관발주 공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2억원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함. (제7조 제3항)
-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 3.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나. 규제사무 : 해당없음
- 다. 관련부서 사전 검토 :

##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제1호 중 “의거”를“따라”로 하며, 제3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공사감독·준공공무원 및 공사 감시관 임명”을 “공사감독공무원 임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감시관의 추천에 따라 민간인을 위촉하여 당해 공사를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조치”를 “주민 설명회 개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2억원 이상의 관발주 공사(단순·반복·긴급공사 등은 제외)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발주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관련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시 공사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와“의거”를 각각 “따라”로 한다.

조례 제282호 울산광역시중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 (용어의 정의)</b>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각종공사”라 함은 구청이나 동에서 발주하는 건당공사비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이하 “<u>관발주공사</u>”라 한다)와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공사(이하 “<u>도로점용공사</u>”라 한다), 「<u>건축법</u>」에 의거 허가받은 민간 건축공사를 말한다</p> <p>2.(생략)</p> <p>3. “준공공무원”이라 함은 각종 공사가 완료되었을 시 공사설계도서·제시방서 및 <u>기타</u> 약정서대로 준공되었는지 여부와 공공시설물 원상회복 상태를 확인하는 공무원을 말한다.</p>	<p><b>제2조(용어의 정의)</b>----- -----<u>뜻은</u>----- 1.----- ----- ----- ----- -----<u>따라</u>----- ----- 2.(현행과 같음) 3.----- ----- -----<u>그 밖에</u>----- ----- -----</p>
<p><b>제3조 (공사감독·준공공무원 및 공사감시관 임명)</b></p> <p>①~② (생략)</p> <p>③(신설)</p>	<p><b>제3조 (공사감독공무원 임명 등)</b></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2항에 따른 공사감시관의 추천에 따라 민간인을 위촉하여 당해 공사를 감시하게 할 수 있다.</u></p>
<p><b>제7조 (조치)</b> ① 공사감시관이 당해 공사의 감시과정에서 부실공사 징후가 있거나, <u>기타</u> 시공과 관련한 문제점 및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공시설물 파손 사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담당부서의장에게 시정·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라도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b>제7조(주민 설명회 개최 등)</b>----- ①----- -----<u>그 밖에</u>----- ----- ----- ----- ----- 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 관발주공사 관련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시 공사시행전 사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사감시관의 추천에 의거 민간인을 위촉하여 당해 공사를 감시하게 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2억원 이상의 관발주공사(단순·반복·긴급공사 등은 제외)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 및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그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발주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관련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시 공사 시행 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제8조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 및 이행상태 확인) ① (생략)</p> <p>② 관발주공사와 도로점용공사는 당해공사의 준공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공공시설물 파손 및 원상회복상태, 공사자재 방치 등 주변환경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여 완벽 복구 등 이상이 없을 시 준공처리하여야 한다.</p> <p>③ 민간 건축공사는 사용검사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별표1의 기준에 의거 공공시설물파손 및 원상회복상태, 공사자재 방치 등 주변환경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여 완벽복구 등 이상 없을시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하여야 한다.</p>	<p>제8조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 및 이행상태 확인)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따라</u>----- ----- -----</p> <p>③----- ----- -----<u>따라</u>----- ----- -----</p>

현 행	개 정 안
<p>부 칙</p> <p>① (생략)</p> <p>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당시 종전의 규정에 <u>의거</u> 이미 발주하였거나 발주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예에 <u>의한다</u>.</p>	<p>부 칙</p> <p>① (생략)</p> <p>② (경과조치)-----          -----<u>따라</u>-----          -----<u>따른다</u>.-----</p>

#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2003.6.9 」  
「조례 제282호」

개정 2009. 4. 6 조례 제460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을 보호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구청이나 동에서 발주하는 건당공사비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이하 “관발주공사”라 한다)와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공사(이하 “도로점용공사”라 한다), 「건축법」에 의거 허가받은 민간건축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공무원”이라 함은 관발주공사와 도로점용공사의 시공 및 공사 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3. “준공공무원”이라 함은 각종 공사가 완료되었을 시 공사설계도서·제시방서 및 기타 약정서대로 준공되었는지 여부와 공공시설물 원상회복상태를 확인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공사감시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공공시설물 보호, 지역주민 여론 수렴의 임무를 맡은 당해 공사장을 관할하는 동의 동장을 말한다

**제3조 (공사감독·준공공무원 및 공사감시관 임명)** ①구청장은 관발주공사와 도로점용공사 착공시 공사감독공무원을 임명하고, 준공시 준공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공시설물 보호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당해공사가 관할하는 동의 동장이 공사감시관이 된다

**제4조 (공사감독)** ①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착수단계부터 시행단계 전과정에 대한 품질·시공·자재·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감독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감독일지를 기록 관리하고 공사진행 상황과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민원발생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감시관의 임무)** ①공사감시관은 이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발주 공사시 공사관련 주민 불편사항, 민원발생시 해결중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현장감시
2. 각종 공사의 준공검사시(민간건축공사의 경우 사용검사 신청시) 민원 해결 여부, 도로·하수도·보도블록 등 공공시설물 파손여부, 원상복구 상태, 환경정비 상태 등의 확인

**제6조 (공사시행 통보)** ①관발주공사 및 도로점용공사의 착공계, 준공계가 접수되면 담당부서의 장은 공사감시관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②민간건축공사의 사용검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축허가 부서의 장은 이를 공사감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조치)** ①공사감시관이 당해 공사의 감시과정에서 부실공사 징후가 있거나, 기타 시공과 관련한 문제점 및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공시설물 파손 사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담당부서의장에게 시정·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라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4.6>

②공사감시관으로부터 시정·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공사감시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③관발주공사 관련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시 공사시행전 사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사감시관의 추천에 의거 민간인을 위촉하여 당해 공사를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 및 이행상태 확인)** ①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도로, 보도블록, 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은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준공검사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야한다.

②관발주공사와 도로점용공사는 당해공사의 준공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공공시설물 파손 및 원상회복상태, 공사자재 방치 등 주변환경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여 완벽 복구 등 이상이 없을 시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③민간 건축공사는 사용검사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별표1의 기준에 의거 공공시설물파손 및 원상회복상태, 공사자재 방치 등 주변환

경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여 완벽복구 등 이상 없을시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이미 발주하였거나 발주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802)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12. 1(수)

나. 제출자 : 고희근 의원외 9명

다. 위원회 회부 : 2010. 12. 6(월)

라. 위원회 심사 : 2010. 12. 16(목)

##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고희근 의원)

### 가. 제안이유

- 중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관발주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 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이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공사감시관의 추천을 받아 민간인을 위촉하여 당해 공사를 감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제3항)
- 2억원 이상의 관발주 공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2억원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설명회를 개최도록 함.(제7조 제3항)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